

보도 2024.11.20.(수) 조간 배포 2024.11.19.(화)

담당부서 중소기업검사3국 검사기획조정팀 책임자 국장 허진철 (02-3145-8810) 담당자 팀장 이동원 (02-3145-8805)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4 - 34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내용

- 엔데믹(Endemic)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제3자에게 카드정보를 탈취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카드 이용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고,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시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마세요!**
 -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책임이나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회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도난·분실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 전화, 카드사 앱 등으로 신고 가능하므로 도난·분실시 바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하세요!**
 - 해외 사설 ATM기, 가맹점 등에서 카드정보가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엔데믹(Endemic) 이후 여행수요 회복으로 '22년부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
 - '24년 상반기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6억원이며,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0억원으로 대부분 (건수 기준 : 89.6%, 금액 기준 : 90.4%)을 차지
- 향후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
 -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회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어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해외 부정사용 발생 추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522	5.3	1,179	15.2	2,324	33.6	1,198	16.6
도난·분실	278	3.0	836	12.1	1,860	29.2	1,074	15.0

(단위 : 건, 억원)

2 소비자 피해사례

1 해외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사례

- ☑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



- ① A씨는 말레이시아의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매치기당함
- ② 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하였음
- ③ 그러나 그사이 절도범들은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도주한 상황
- ④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음

2 상점에서의 카드 IC칩 탈취 사례

- ☑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하여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

① 타인의 신용 카드 탈취

② 기존 신용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IC칩 제거

③ IC칩을 바꿔치기한 후 새로운 카드에 입력

④ 카드 부정사용

① B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

② 현지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하여 다른 카드에 탑재 후 카드 부정사용

☑ B씨는 해외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의심 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하였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에서야 IC칩 탈취 및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신고

☑ B씨가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해두었다면 귀국한 후에는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음

3 사설 ATM기에서 발생한 카드정보 복제 사례

- ☑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

① C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ATM기에서 범인들이 미리 설치한 카드 복제기를 모른 채 현금인출

② 범인은 C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매장 의류 쇼핑 등 카드 부정사용

③ 범인들은 소액 위주로 결제하여 카드사의 FDS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감시망을 피해 갔음

④ C씨는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었다면 부정사용 조기 인지 및 예방할 수 있었음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해외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①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세요.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직접 설정한 사용국가, 사용카드, 1회 사용금액, 사용가능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

② 또한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간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 카드회원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

※ 각 카드사 고객센터,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시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마세요!

- ☐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입니다.

○ 다만,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시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② 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여전법」 §16 ② 및 동법 「시행령」 §6 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짐

3] 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카드사에 신고 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①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시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②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문자(SMS)로 제공받으므로 부정사용 발생시 빠르게 대처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시마다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금액, 시간, 가맹점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참고] 카드 분실 신고 연락처

- 1) 유선신고 롯데 1588-8100 비씨 1588-4515 삼성 1588-8900 신한 1544-7200
우리 1588-5300 현대 1577-6200 하나 1800-1111 KB국민 1588-1788
- 2) 카드사 앱 신고 카드사 「고객센터(고객지원)-카드분실신고」에 접속하여 간편 신고 가능

4]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하세요!

□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기 이용을 피해야 합니다.

⇒ ① 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 등에 따른 도난·분실을 주의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카드소지자 본인이 보는 곳에서 하도록 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